

의안번호	제 4 호
의결년월일	1999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9. 2. 2.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1999. 2. 2.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어긋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“영 제95조의2제1항” 을 “영 제95조의2제2항” 으로 한다(안 제38조제4항)

나. “조정원가” 를 “조성원가” 로 한다(안 제38조의2제2항)

3. 법적근거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중 “영제95조의2제1항”을 “영제95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제2항중 “조정원가”를 “조성원가”로 한다.

제48조제1항중 “농촌지도소”를 “농업기술센터”로 한다.

제49조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8조(수의계약 매각범위등)</p> <p>①. ~ ③. (생략)</p> <p>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<u>영제95조의2제1항</u>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8조(수의계약 매각범위등)</p> <p>①. ~ ③. (생략)</p> <p>④ ----- <u>영제95조의2제2항</u> -----</p>
<p>제38조의2(매각대금의 감면)</p> <p>①. (생략)</p> <p>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<u>조정원가의</u>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.</p>	<p>제38조의2(매각대금의 감면)</p> <p>①. (생략)</p> <p>② ----- <u>조정원가</u> -----</p>
<p>제48조(종합청사의 도모)</p> <p>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, <u>농촌지도소</u>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.</p>	<p>제48조(종합청사의 도모)</p> <p>① ----- <u>농업기술센터</u> -----</p>
<p>제49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,부시장,국·<u>담당관</u>·<u>과장</u> 등 소속직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과 등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있는 공용전세 주택을 말한다.</p>	<p>제49조(정의) ----- <u>실·과장</u> -----</p>